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사업비 지급 운영세칙**

제정 2020. 12. 31.
1차 개정 2021. 02. 03.
2차 개정 2021. 09. 08.
3차 개정 2022. 06. 08.
4차 개정 2022. 09. 07.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복지대학원(이하 대학원) 및 대학원 BK21 FOUR ‘공정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과 협력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의 사업비 운영내규에 따라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수 및 학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회계) BK21 FOUR 국고지원금 집행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8. 5)」에 준한다. 기존 참여교수 이외의 신입교수의 경우 BK21 FOUR 사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은 대학 자체 기금을 사용한다. 단, 연세대학교 재원의 경우는 연세대학교 BK21 FOUR 총괄본부의 규정 및 교육연구단의 자체 운영규정 및 세칙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 3조(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지원) ① 교육연구단은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참여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내·외 학술활동(학술대회에서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 등)시 여비, 참가등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와 참가등록비의 경우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학회의 특성상 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계좌이체 방식에 의해 지급한다.

③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내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가. 지원대상: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 참여교수: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진연구인력: 발표논문의 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
- 참여대학원생: 발표논문의 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 (단, 외부소속과 공저인 경우 지도교수의 확인 후에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범위

- 수도권: 참가등록비만 지원
- 수도권 외: 여비(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내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와 참가등록비 지원(최대 15만원 이내)
- 참여대학원생의 단순참석 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내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여비와

- 참가등록비를 함께 지급. 학술대회 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인원은 최대 3명까지 지원
2. 국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 가. 국외 학술대회 점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개국 이상
 -구두발표논문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이상

나. 지원대상: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 참여교수: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진연구인력: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 참여대학원생: 발표논문의 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 (단, 외부소속과 공저인 경우 지도교수의 확인 후에 지원할 수 있다.)

다. 지원범위: 국외 여비와 참가등록비 지원

-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외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원
- 참여대학원생: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최대 130만원, 아시아의 경우 최대 70만원을 지원

④ 단,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참가등록비만 지원한다.

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지원신청서
2. 발표논문 사본
3. 학회참가 증빙자료(참가등록접수증 등)
4.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5. 출장자별 항공료 E-ticket 및 결제영수증(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⑥ 학회 참가를 위한 교통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4조(장기 해외연수) ① 장기 해외연수 후보는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재학생 중 희망자로 하고, 희망자는 지도교수 추천서, 학술활동보고서, 연구계획서,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발 및 기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사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장기해외연수자를 선발한다. 심사항목은 희망분야, 희망기관, 준비정도, 연수계획, 연수능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 15일 초과 ~ 6개월 이하
2. 지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8. 5)」에 따라 집행한다. 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 내의 체재비(필요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별도로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3. 해외인턴십 활동경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
4.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 ④ 해외연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되며,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교육연구단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때

2.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4.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5. 선정 이후에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6. 연구 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7. 관리지침(연수계획서 포함)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8.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해외연수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⑤ 장기해외연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수진행 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한다.
1. 착수보고서: 연수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2. 진도보고서: 연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귀국보고서: 연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기타보고서: 사업단에서 요구시 수시 제출
 5. 결과보고서: 연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⑥ 장기해외연수자는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 5조(해외 현장실습 지원) ① 대학원생을 창의 융합 사회복지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해외 및 국내의 다양한 실습지를 개발하고, 해외에서 실습을 하는 대학원생에게 체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 ② 해외 현장실습 후보는 참여대학원생 중 실습 과목 수강생으로 한다.
- ③ 선발 및 기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사항목을 종합평가하여 해외 실습지원자를 선발한다. 심사항목은 희망분야, 희망기관, 준비정도, 실습계획, 실습능력 등으로 구성한다.
- ④ 국제실습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지원범위: 국외 여비와 참가등록비 지원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외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원
 -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최대 130만원, 아시아의 경우 최대 70만원을 지원
- ⑤ 해외 현장실습 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지원신청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실습 계획서
 4. 해외 현장실습 계약체결 증빙자료(해외 실습기관의 공문 등)
 5. 항공료 E-ticket 및 결제영수증
 6. 실습보고서
- ⑥ 해외 현장실습을 위한 교통비 등은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6조(해외석학 초빙) ①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지급 기준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8. 5)」에 따라 집행한다. 해외석학 초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2.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3. 지급기준

가. 강연료 및 자문료: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적용

구분	자문료(USD(\$))		강연료	비고
	단기(일)	장기(월)		
제1호	\$700 이내	\$20,000 이내	\$1,500/회 이하	제세 포함
제2호	\$400 이내	\$11,000 이내	\$1,000/회 이하	

* 장기: 1개월 이상 활용, 단기: 1개월 미만 활용

4. 자격기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기타
제1호	전임교원 이상	선임급 이상	경력 10년 이상
제2호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②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출장비 산정 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④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 7조(기타 국제화경비) ①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비전에 부합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이와 관련된 경비(회의장 대여료, 행사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등)를 집행할 수 있다. 단,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② 이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비 카드를 통해 집행하며, 행사 일시·장소·참석자 및 행사내용 기재한 회의록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 8조(국제 학술논문 투고 지원) ①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이 공저인 학술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영문교정비를 지원한다.

- ② 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 ③ 지원을 받은 참여대학원생은 투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9조(국내 학술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지원) ① 발표논문의 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지원한다.

1. 지원 규모: 게재료와 심사료 총합 최대 40만원

2. 지원기준

- 가. 저자의 소속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으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타 기관과 연세대학교가 이중표기되어 있는 경우 총 지원금액의 50% 지원
- 나. 논문 투고 시 발생하는 입회비, 연회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 다. 외부 소속인과 공저인 경우 심사료 및 게재료 일부를 지원(외부 1인 70%, 2인 50%, 3인 이상 40% 지원 인정)
- 라. 일반대학원 사회복지 정책협동과정 학생은 내부 소속인에 준하여 지원가능하며, 그 자금은 사회복지대학원의 대응자금으로 지원

마. BK21 FOUR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논문임을 사사표기를 한 경우 지원함. 단,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 해당 논문이 사업단의 방향성과 일치함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3. 지급방법

가. 게재료 및 심사료는 배분하지 않으며, 공저자수에 관계없이 편당 1명에게 지원

나. 해당 학회로부터 게재료 안내를 받으면 이를 사업단에 보고하고 사업단에서 학회에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 선지불 후 사업단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② 논문게재료 및 심사료 지원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지원신청서
2. 논문 사본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
3. 게재료 안내 이메일(학회발송), 심사료/게재료 영수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

제 10조(국내외 전문가 전문가 활용) ① 교육연구단 주최 워크숍, 세미나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 관련 비용(강연료 및 자문료, 심사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지급 기준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8. 5)」에 따라 집행한다. 국내 전문가 초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준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 기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기타
제1호	전임교원 이상	선임급 이상	경력 10년 이상
제2호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강연료 및 자문료: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적용

가. 국내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 (단위 : 원/제세금 포함)

구분	자문료		강연료	비고
	단기(일)	장기(월)		
제1호	15만원 이내	30만원 이내	50만원/회 이내	제세 포함
제2호	10만원 이내	25만원 이내		

※ 자문료 신청시 자문활동 시간 및 일수 활동내역에 기재

- 장기자문: 2일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2회 이상의 자문
- 단기자문: 1일 이내 1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문

나. 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

구분	자문료		강연료	비고
	단기(일)	장기(월)		
제1호	\$700 이내	\$20,000 이내	\$1,500 /회 이하	제세 포함
제2호	\$20,000 이내	\$11,000 이내	\$1,000 /회 이하	

※ 장기: 1개월 이상 활용, 단기: 1개월 미만 활용

3. 심사료: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적용 (강연료 및 자문료에 준함)

- 교육연구단의 자체평가 등의 평가시 관련 비용(심사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적이 한국인이더라도 외국 기관 소속이면 국외 전문가로 분류한다.

제 11조(학위논문 연구지원금) ① 대학원생 중 종합시험을 통과한 석·박사수료생을 대상으로 학위논문 연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논문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석·박사수료생

- ③ 지원금액: 석사수료생 30만원, 박사수료생 50만원 이내로서 지출증빙 자료에 근거해 실비로 지급한다.
- ④ 학위논문 연구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 1. 지원신청서
 - 2. 지출증빙 자료

제 12조(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지원) ① 대학원생 간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 ② 공동연구 지원 과정 중 다음의 서류를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신청한다.
 - 1. 연구 계획서 (공동연구 지원 신청 시 지원서 명목)
 - 2. 발표 자료 (매 학기 지정된 학술발표회)
 - 3. 학술지 투고논문 (학술지 투고 후 제출본)
- ③ 매 학기 1회의 학술발표와 학술지 논문투고로 연구 결과 보고를 대신한다.
- ④ 교육연구단의 평가 후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 ⑤ 평가 항목은 다음의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체 항목의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논문의 독창성/주제의 중요성(20), 연구방법론과 내용의 심층도(20), 논문의 조직 및 구성(20),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도(20), 논증과정의 타당성(20)
- ⑥ 지원금액: 팀당 50만원 이내로서 연구 논문과 발표 내용에 근거해 발표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 ⑦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음의 6개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A (90점 이상): 50만원, B (80점 이상 90점 미만): 45만원, C (70점 이상 80점 미만): 40만원,
D (60점 이상 70점 미만): 35만원, E (50점 이상 60점 미만): 30만원, F (50점 미만): 지원제한 또는 불가

제 13조(졸업생-재학생 간 취업 멘토링 지원) ① 취업상담 및 진로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졸업생을 초청하여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 확대, 선후배 간 유대관계 강화를 도모한다.

- ② 멘토링 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 1. 지원신청서
 - 2. 멘토 이력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3. 멘토링 활동 보고서
- ③ 교육연구단의 논의 후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 ④ 지원금액: 멘토에게 한 학기당 2회(1회당 5만원) 지원할 수 있다.

제 14조(교수 출장비) ① 국내·외 대학, 정부, 연구소 등과의 협력 등을 위한 출장 시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학협력단의 여비 규정에 준하되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5조(교수 연구활동지원) ① 교수 연구활동지원은 교수의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 및 BK21 FOUR 교육연구단의 연구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교수 연구활동 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 1. 지원신청서
 - 2. 연구 프로포절
- ③ 운영위원회의 논의 후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 ④ 지원 받은 교수의 경우 지급 후 2년 이내에 SSCI급, 국내학진등재(후보)지에 논문 게재 혹은 저·역

서를 발간하도록 한다.

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사항은 사업단에서 관리 운영한다.

제 16조(성과급) ① 성과급 지급 기준은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학회지별 기준

(기준: 만원)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전문저서	
SCI/SSCI	SCI/SSCI 외	학진등재지	학진등재후보지	국문	외국어
100	50	30	25	50	100

나. 신진연구인력 지급기준

- 단독저자일 경우 100% 인정
- 공저일 경우 1/n 인정
- 제1저자, 교신저자일 경우 10% 가산. 단, 단독저자는 추가 가산 없음
-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 재원은 인건비 예산에서 지출된다.

다. 참여대학원생 지급기준

- 참여교수와 공저일 경우에 지원하며 공저자수에 상관없이 편당 1명에게 지급
- 참여교수를 제외한 외부 소속인과 집필 시 외부 소속인의 수에 따라 차등지원(외부 1인 70%, 2인 50%, 3인 이상 40% 인정)
-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 재원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에서 지출된다.

② 성과급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게재 완료된 논문인쇄본
2. 지원신청서

제 17조 (기타) ① 동 시행세칙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다.

② BK21 4단계 사업 관련 학술연구교수 신설에 따라, 임용된 학술연구교수 지원은 신진연구인력 기준에 준한다.

부 칙 (2020.12.31.)

제 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4단계 두뇌한국(BK)21 1차년도 사업의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 지급은 지난 3단계 BK21 운영세칙 기준으로 지급을 완료하여, 현재의 지급기준은 2021년 3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제 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